

〈論 文〉

# 通信主管廳의 行政組織에 對한 合理化方案

—中央機構 및 通信人力을 中心으로—

A Study on Rational Methods For M.O.C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Korea.

王 志 均\*  
Wang, Jee Kyoon

(접수 일자 80. 10. 24.)

<目 次>	
I. 序 論 II. 通信主管廳의 行政組織의 意義 1. 概 念 2. 分 析 III. 中央機構의 補完 및 強化 1. 通信政策局의 新設	2. 電波管理 組織의 強化 IV. 通信人力의 確保 1. 公務員任用令等の 檢討面 2. 逓信部 人事行政의 改善點 V. 結 論 參考文獻

## I. 序 論

現代를 Communication의 時代 또는 情報化社會라고 일컫고 있는 것은, 個人間的 通信(Inter-Personal Communication)이거나 <매스콤(Mass Communication)>의 發達로 因하여 通信 없이는 國民은 現代의 社會生活을 營爲할 수 없게 될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즉 通信은 現代生活의 中心課題이며, 社會의 動脈을 形成하고 있다<sup>1)</sup>.

이와 같이 重要한 通信은 必然的으로 國家의 規制를 받아야만 하는 故로 結局 國家通信行政은 國民의 現代社會生活을 支配하는 關鍵인 것이다.

近來 우리 나라에도 環境廳이 新設되어 大氣汚染防止等の 行政이 脚光을 받고 있는 바, 生存의 要件인 空氣(air)에 匹敵되는 生活上의 要件인 通信에 關한 國家行政에 對하여 注目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

된다.

國家通信行政을 概觀하면, 國民의 言論이나 社會의 輿論 및 新聞·放送·映畫·出版·宣傳等 所謂 <매스콤>에 屬하는 部面을 主管하는 것은 文化公報部이고<sup>2)</sup> 國民이 日常生活上 常用하는 電話·便紙(郵便)·電報(電信)等の 모든 通信은 逓信部가 主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sup>. 다만, 電波通信에 關한 管理行政은 逓信部の 電波管理局에서 主管하는 바<sup>4)</sup>, 無線放送局(AM·FM·TV等)에 關해서만은 電波管理局長이 文化公報部長官과 合議制로 許可하고 있다.

이와 같이 國家通信行政은 廣汎多岐할 뿐 아니라 筆者는 言論이나 <매스콤>의 門外漢이므로 文化公報部の 主管하는 部面에는 言及을 避하고 主로 逓信行政만으로 範圍를 좁혀서 考察코자 한다.

報道에 依하면, 從來 逓信部에서 直接經營하는 電信 電話事業을 通信公社를 發足시켜 分離시킨다고 하는 바, 이의 實現은 逓信部行政機構의 改編을 必至케 할

\* 本學會 理事·光云工大 敎授

1) 三浦一郎, 政信政策의 課題と 展望, 第一法規出版株式會社, 東京, 1974. p.3

2) 政府組織法 第42條(文化公報部) 第1項: 文化公報部長官은 文化·藝術, 國內外의 輿論 調査·言論 宣傳 및 報道의 放送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3) 上揭法, 第41條(逓信部) 第1項: 逓信部長官은 郵便·電信·電話·郵便換 및 郵便對替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4) 上揭法, 第41條 第2項: 電波管理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기 爲하여 逓信部長官 所屬下에 電波管理局를 둔다.

것으로豫想된다.

此際에, 우리 나라 通信行政의 總本山이며 電氣通信의 主管廳인 遞信部의 行政組織에 關하여 研究를 하는 것은 通信專攻者의 當爲라고 믿어진다.

通信行政組織에 關하여는 先進國인 美國이나 日本의 行政先例가 價値있는 比較資料가 될 것 같다.

이제, 通信에 關한 國際條約·法令·國內외의 法書·論文 및 定期刊行物等에 의한 文獻研究方法에 의하여 우리 나라 通信의 主管廳인 遞信部의 行政組織에 對한 合理化方案을 探究하고 建設의인 代案을 引出할 수 있도록 檢討 論述코자 한다.

이 小見이 遞信行政의 效率化에 의한 우리 나라 通信發展促求의 補足이 되어 國民福祉向上과 祖國隆昌에 寄與될 것을 祈願한다.

## II. 通信主管廳의 行政組織의 意義

### 1. 概 念

國際電氣通信協約(ITC)에 規定된 主管廳의 定義는 [이 條約의 義務의 履行을 擔當하고 國家의 責任을 져야 하는 會員國 政府의 部處를 말함]이므로 곧 遞信部를 指稱하는 것이다. 따라서, 電氣通信에 關한 限 모든 最高 責任을 갖고 있는 우리 나라의 行政官廳은 遞信部이다.

組織이란, [特定한 目標을 追求하기 위하여 意圖의 으로 慎重하게 計劃해서 構成된 社會的 單位 또는 人間의 集合體]이며<sup>5)</sup>, 行政組織이란 [行政目標을 實現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組織이며 行政權이 그 機能을 遂行하기 위하여 設置한 機關의 公式的構造]<sup>6)</sup>를 말한다.

따라서, 通信主管廳의 行政組織의 意義는, 우리 나라 遞信部의 組織으로서, 行政目標·行政機構 및 行政人力의 3個 要素로서 分析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2. 分 析

#### ① 行政目標

遞信行政의 作用法 根據로는 郵便法·電氣通信法 및 電波管理法이 있다. 이들 法律의 各 1條인 目的을 檢

討하면 비록 行政對象의 다음으로 因하여 各 目的達成의 方法이나 手段은 相違하지만, 모든 行政目標는 [公共의 福祉를 增進함]에 있음이 共通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遞信行政은 國民의 便益을 圖謀하는 福祉行政의 하나라고 보아진다.

#### ② 行政機構

遞信部의 行政主體를 規定한 根據法令으로서는 政府組織法, 遞信部職制, 電波管理局職制 및 其他 職制가 있다.

이에 따른 遞信部行政의 中央機構로서는 遞信部職制에 基한 本部機構와 外局인 電波管理局이 있다.

#### ③ 行政人力

遞信部의 行政人力은 모두 國家公務員인 身分上 公務員任用令과 公務員任用試驗令의 適用을 받는 것은 當然하지만, 行政目標達成을 위한 推進力임도 分明하다.

## III. 中央機構의 補完 및 強化

### 1. 通信政策局의 新設

#### (1) 必要性

1980年 3月 31日字 서울신문 社說은 [通信公社의 發見에 따라, 遞信部는 政策樹立, 電波管理, 郵政業務만을 擔當하는 政策機能만 遂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 이는 遞信部의 中央機構로서 通信政策 組織이 必要함을 示唆한 것으로 解釋된다.

平素에도 筆者는 遞信部長官下의 企劃管理室·計劃局 및 同次官下의 非常計劃官·技術政策官等 비록 企劃이나 計劃의 名稱은 相異하고 各職務도 다르지만 通信政策局의 名稱下에 統合하면 有益할 것이 아닐까 하는 警見을 가진 바 있었으나, 上記 新聞이 主張하는 대로 政策機能만 遂行키로 된다며는, 現在의 企劃管理室下의 經營分析·行政資料, 教育訓練, 企劃豫算 및 其他도 모두어 그야말로 通信政策局의 新設이 適切할 것으로 希願된다.

行政政策이란 政府機關의 將來의 主要行動指針이나 最善의 公益實現을 위한 公式的 意圖로서 우리 國家發展目標의 達成을 위한 根本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組織論에서의 計劃이나 機構의 統合 및 人力의 調整等이 모두 이 政策局에서 決定되길 바라는 것이다.

5) 金晉均 外 1人, 經營組織論, 法文社, 서울, 1975, p.26

6) 金圭定, 新行政學原論, 法文社, 서울, 1976, p.140

(2) 外國의 行政先例

美國에서는 1968年 12月 7日 <로스토크>教授의 研究報告提出에 따라 1970年 大統領府에 通信政策局(Office of Tele-communication Policy=OTP)이 創設되었다. 그러나 當時의 大統領인 <존슨>氏가 <닉슨>大統領으로 改任됨에 따라 얼마 後 商務省으로 移管되었다 한다.

有名な <워터게이트>事件이라는 通信秘密侵害事件이 世界를 震動하여 結局 <닉슨> 大統領의 下野를 보게된 原因은, 이 OTP를 그냥 大統領府에 存置하였던들 안 일어났을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된다.

日本에서는 1970年 郵政大臣 直轄으로 通信政策課가 設置되어 通信에 관한 研究·調査·企劃의 3大業務를 執行하고 있다. 이는 大藏省下의 財政金融政策·運輸省의 交通政策·厚生省의 社會政策과 比等되는 것인 바, 郵政省에서의 通信政策의 不在는 곧 나라의 通信行政의 不在를 招來하는 것이라고 極言하고 있다.

通信政策의 目的은, 첫째 나라의 通信需要에 應하는 通信機關의 普及를 圖謀하는 일이며, 둘째 國際通信에 있어서 通信手段에 의한 世界市場에의 進出을 促하는 일이며, 셋째 通信手段의 現代化를 促進시키는 일이라고 한다<sup>7)</sup>.

2. 電波管理 組織의 強化

(1) 必要性

① 他部處와의 均衡維持

電波管理行政과 抵觸 乃至 영향이 比較的 많은 政府機關은 海運港灣廳과 文化公報部이다. 海運港灣廳과는 船舶無線局의 電波通信士의 定員 問題가 있고, 文化公報部는 無線放送局의 許可·再許可等의 問題가 있다.

1973年 2月 16日 法律 第2529號로서 電波管理法이 改正된 主要骨子의 하나는 同法 第37條(通信長의 配置·無線從事者의 資格과 定員)의 改正이었던 바, 이 內容은 從前 3名까지도 規定되었던 船舶通信士의 定員을 實質的으로 單 1名制로 削減한 것이다.

當時, 韓國船員勞動組合, 韓國船舶通信士協會, 韓國無線從事者協會, 國立航空大學, 國立木浦海洋高等專門學校, 光云工科大学等은 그의 改惡을 反對하는 建議書를 國會에 提出한 바 있었으나 이들의 民意는 一切 抹殺된 채 韓國船主協會만의 改正案이 通過可決되었었다. 傳聞컨대 이는 海運港灣廳長의 影響이 컸었다 한

다. 萬一 當時 國會交通分科委員會에서 海運港灣廳長과 電波管理局長을 招致하여 對審 討議를 시켰다고 假定한다면, 軍人階級制에 準하는 公務員體系下에서 2級職인 電波管理局長이 別定職 海運港灣廳長인 上級者에게 敢히 不服할 수 있겠는지 하는 想像을 할 수 있다.

其後에 나타난 船舶通信의 現況을 살펴 보면, 可憐한 通信士의 過勞는 姑捨하고, 海上에서의 事故 續發인 바, SOS도 없었던 船舶遭難擄奪事云云은 偶然만이 아닐 것 같다. 優秀한 青年들의 海上進出 忌避커녕 아예 新進의 乘船機會가 遮斷되었으므로 現役의 隱退後에는 海上無線通信의 全滅이 豫見된다. 이는 單純한 通信士의 問題가 아니라 實로 우리 나라 通信行政의 至極한 不幸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放送局의 許可에 있어서의 合議行政官廳制는 電波管理法 施行令 第23條(文化公報部長官과의 合議)로서 足한 바, 世宗 同令 第35條(審査와 許可)의 第2項으로서 [局長은 法第12條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放送局의 再許可를 할 때에 放送法 第6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公報部長官으로부터의 再許可留保 要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反映하여야 한다]로써 새로이, 加插 改正한 것은 屋上屋 또는 蛇足이라는 衆評을 듣게 하였었다.

元來, 國家 法令의 改正은 關聯部處와의 合議를 要하는 것 같다. 或者是 電波管理法令의 國際法 準應實施가 時急하여 文公部の 同意를 要請했을 때에, 文公部에서 上記 施行令上의 該當規定 加插을 條件으로서 不合議 乃至 遲延을 影響한 것이 아닌가라고 想像하고 있기 때문이다.

電波管理局長의 職位가 格上되어 他部處와의 均衡이 維持되도록 電波管理 行政組織의 強化를 바라는 所以然이다.

② 行政官廳으로서의 位置

電波管理局長은 政府組織法上 通信部長官下의 第一次所屬官署로서 外局임이 分明하다. 따라서 行政官廳으로서 電波管理에 관한 國家意思를 決定하고 이를 外部에 表示한다. 즉 無線局이나 高周波利用設備의 許可나 無線從事者의 國家技術資格手帖 發給은 電波管理局長의 名義로 行하여진다.

國際的으로는 I.T.C.의 規定上, Malaga Torremolinos, 1973의 標示下에 該局長 個人 署名이 通用되는 바, 英字로는 Director-General office of Radio

7) 三浦一郎, 前掲書, pp. 68~110

Regulatory Republic of Korea 이다.

法律인 電波管理法상의 國家 行政主體는, 遞信部長官이 아니고 모두 電波管理局長으로 改正된지도 오래이다.

또한, 電波通信은 專門인 知識을 가져야만 能히 管理할 수 있는 最新科學에 屬하는 稀貴한 文化資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重要성과 特殊한 技能을 要하며, 國家發展에 關하여 行政的·科學的 및 專門인 機關의 長인 電波管理局長은 마땅히 1級 以上으로 그 職位가 昇格되어야 한다.

### ③ 國家安保의 強化

1979年 Geneva에서 開催되었던 世界無線通信主管 廳會議에서 I.T.C. 附屬 無線通信規則 (R.R.)이 改正된 바, 現在 大韓民國이 使用하는 國際呼出符字列 HMA~HMZ는 84年 1月 1日부터는 北傀의 使用으로 決定되었다. 비록 우리 나라에서는 DSA~DTZ를 더 使用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電波에 있어서의 北傀의 間接侵略이라고 指摘된다. 南倭을 위하여 手段 方法을 가리지 않는 北傀는 드디어 ITU에도 1975年 會員國으로 加入한 後 이런 侵略을 敢行하기에 이르렀으니 앞으로 어떠한 類나 範圍의 侵略行爲가 恣行될 前途가 憂慮된다. 이 ITU의 全權代表會議에 大韓民國 代表로서 參席하는 電波管理局長은 그의 活動이나 運營의 困難이 莫重하다 하겠다. 아울러 ITU傘下 無線通信主管廳會議에서도 北傀와 熾烈한 對決을 하여야만 하는 電波管理局長은 그에 對한 計劃이나 指示에 萬호을 期하여야 한다.

崔前大統領의 年頭巡視에서도 北傀의 不法 電波의 亂舞에 對하여 國家保安面에서도 重大한 問題이니 徹底한 電波管理모씨 이를 規制해야 할 것이라고 指示한 바 있었다.

따라서, ITU의 諸國際會議에는 적어도 北傀보다는 많은 國家代表人員과 豫算이 充用되어야 한다. 이런 責任과 重要性을 가진 業務를 管理하는 電波管理局長이 單純한 2級職을 長으로 하는 官廳라 하여 經濟企劃院이나 其他 內外의 制約을 받는다면은 可惡한 結果가 危懼되므로 그의 格上強化는 時急한 課題이다.

### (1) 昇格의 方向

#### ① 廳長

政府組織法에 基하면 各部長官下의 第一次所屬官으로서 “廳長”의 名稱을 가진 行政官廳이 있다. 즉 經濟企劃院의 調達廳, 內務部의 山林廳, 財務部의 專賣廳·

國稅廳 및 關稅廳, 法務部의 檢察廳, 國防部의 兵務廳, 農水産部의 農村振興廳과 水産廳, 商工部의 工業振興廳과 特許廳, 保健社會部의 勞動廳과 環境廳, 交通部의 鐵道廳과 海運港灣廳이 있다. 따라서 電波管理에 關한 業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遞信部長官 所屬下에 電波管理廳을 두고, 廳長 1人(別定職) 및 次長 1人(別定職 國家公務員)이 두어지길 바란다.

#### ② 次官補

政府組織法에 基하면, 行政各部 또는 院에는, 長官과 次官을 補佐하게 하기 위하여 次官補를 둘 수 있다는 規定이 있다.

즉, 外務部에 2人 以內, 內務部에 1人, 財務部에 3人 以內, 國防部에 4人 以內, 農水産部에 4人 以內, 商工部에 4人 以內의 各 次官補를 둘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遞信部에 次官補(別定職 國家公務員) 1人을 둔다]로 改正되길 바랄 수도 있다.

#### ③ 1級 職位

政府組織法 第2條(中央行政機關의 設置·種類·名稱과 組織) 第5項에 基하면 外局의 長은 2級인 一般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하되, 다만 그 所管事務의 性質 往 特別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別定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다고 規定되어 있다.

萬不得已할 때에는, 職位分類法(法律 第1434號, 1963年 11月 1日)에 따라 一般職인 1級 公務員으로 昇格되는 路로 바랄 수 밖에 없다.

#### ④ 國家政策上의 問題

電波管理 組織의 強化를 바라는 所願으로서는 다음 行政 事項의 電波管理局에의 統合도 併望되는 바, 이는 國家의 政策上의 問題에 屬하는 것이지만 通信을 基礎으로 한 所見에서 提議하는 바이다.

#### (가) 通信技術資格檢定業務의 主管 選元

通信技術資格은 通信의 本質上 國際性이 多大한 바, 特別히 電波通信技術(技能은 2級 包含)는 國際電氣通信條約에 基하여 各 電氣通信의 主管廳에서 當該 免許를 發給키로 規制되어 있으므로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다.

國家技術資格法은 關係人士의 熱誠의 盡力으로써 우리 나라 技術人力의 輩出에 劃期的인 功績을 빛낸 것은 누구나가 讚揚하여 마지않는 바이나, 너무도 많은 技術資格을 統合하여 均一的으로 實施하는 關係上 國際的인 特殊免許만은 該當人力의 主管處로 選元함이 行政管理上에도 有益한 것이라는 衆論이 있다. 航海士나 船舶機關士의 免許試驗은 옛부터 海運港灣廳에서 實施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R.R.의 改正은 從前 第1級無線通信士의 先順位로서 無線通信士 一般證明書(Radio-Communication Operator's General Class)를 新設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船員의 訓練·資格證明 및 當直勤務의 基準에 關한 國際協約(STCW)”이 1978年 London에서 締結되어 우리 나라도 이에 調印을 憑한 바, 이 속에는 船舶無線士官에 要求되는 새로운 項目이 적지 않게 規定되어 있다<sup>8)</sup>.

따라서 R.R.과 STCW와의 調和를 圖謀한 後의 電波管理法令의 改正 發效는 重要課題인 바, 이 複雜하고 專門인 作業은 亦是 電波管理局의 主管事項이므로 이에 依한 電波通信技師檢定業務도 科學技術處에 이은 韓國技術檢定公團의 所管으로부터 電波管理局에 移管 還元되길 바란다.

#### (나) R/TV 管理의 一元化

R/TV는 無線通信設備이며, 放送聽取만을 目的으로 하는 受信機라 할지라도 重大하고 繼續的인 障害를 다른 無線設備에 끼치게 되려는 電波管理法의 適用을 받게 된다<sup>9)</sup>.

其間 電子의 <풍>에 따라 電子工業振興法이 商工部의 主管에 의하여 制定되어 라디오나 TV의 受信機 등에 대한 開發·研究·生産 등이 管理되고 있으나 原則으로는 無線設備工業振興法 또는 電氣通信設備工業振興法으로서 逕信部가 主管했어야 될 것이 아니었다는 가라는 느낌이 든다.

電氣通信法은 改正되어 電氣通信用品生産의 技術指導育에 關한 事項 및 電氣通信機器用品의 開發等은 逕信部長官의 管掌事項으로 規定되어 있다<sup>10)</sup>.

따라서, 商工部 所管의 R/TV 管理도 電波管理局에 의 統籌을 바라는 바이다.

#### (다) 放送管理의 單一化

1980年 6月 28日 逕信部는 우리 나라의 <칼라> TV 放映方式은 美·日과 같은 NTSC 式으로 確定했다는 發表를 하였다.

이는 放送의 技術的事項 管理는 文化公報部가 아니고 電波管理局임을 明示한 一端이다. 우리 나라의 黑白 TV 放映方式이 NTSC 式임을 定한 것도 亦是 63年 1月 7日 電波管理局의 告示에 의한 것이었다.

前述한대로 無線放送局은 電波管理局長과 文化公報部長官과의 合議行政官廳制에 있음은 國民을 不便케 하

는 것이므로 單一化를 바라게 되는 것이나, 有線放送도 無線에 準하여 技術的 管理는 文公部보다 逕信部가 더욱 專門的인 것이므로 政府의 放送管理는 有·無線을 모두 합쳐 電波管理局長 單一主管으로 統籌되었으면 한다.

## IV. 通信人力의 確保

### 1. 公務員任用令等の 檢討面

公務員任用令과 公務員任用試驗令은 國家公務員으로서의 奉仕를 希望하는 젊은이에게는 큰 꿈의 關門일 뿐 아니라 昇進을 바라는 公務員에 대하여도 가장 要緊한 法令이다.

이 法令은 原則上 公務員에게 適用되지만 實地에 있어서는 우리 國家의 人事行政基準이므로 民間會社等の 人事制度에도 準用된다.

이 中에는 通信人力에 關한 規制가 있는 바, 欠缺이나 不適이라고 생각되는 切實한 點이 指摘되므로 그 事由와 아울러 素朴하지만 各 改正案까지도 敢히 提示하여 適正한 通信人力 確保에 寄與케 됨을 促求코자 한다.

#### (1) 公務員任用令의 檢討

##### ① 現規定

現在의 公務員任用令 別表 1인(1級 乃至 5級 職級表)中 通信人力에 關한 拔萃는 附錄 1表와 같은 바, 從前 [職群 5. 行政]에 있던 電務 職列이 削除되어 [職群 14, 通信]에 加插統合된 것은 進一步한 것으로 歡迎된다.

##### ② 改正案

逕信技術에는 工學分野만이 아니고 運用이나 管理分野도 包含되어야 하며, 또한 通信이야말로 研究되어야 할 分野이므로 逕信管理官·逕信研究官 및 逕信運用職(逕信士職 改稱)의 新設이 要望된다.

電子通信技術職이란 電話交換關係의 hardware 側으로 推定되는 바, 너무도 莫然한 總稱의 呼稱이므로 이를 具體化하여 呼稱함이 正確하며 아울러 傳送技術은 <데이터> 通信關係의 hardware 側으로 推定되나 電話交換職도 電子計算機가 所關되므로 重疊感이 있다.

逕信技術職도 不明確한 感이 있으므로 國家技術資格制度에 따라 通信設備(有線 및 無線 包含)로 改稱하여 調和됨이 바람직하다.

8) 王志均, 無線從事者의 當面課題, 一電波通信技師를 中心으로-, 韓國無線從事者協會誌, 1978年 第19號, pp. 2~6

9) 電波管理法 第71條(受信設備에 대한 監督)

10) 電氣通信法 第1條(目的) 및 第3條(電氣通信의 管掌)

傳送이나 電子通信은 結局 通信設備의 分野이고 工學分野이므로 上級職은 統合하고 下級 階級만을 分離함이 좋을 것이다. 즉, 通信을 運用과 設備로 二大分하되 最上 階級은 管理官으로서 1級職으로 함이 希望되며 아울러 通信研究官도 1級 職階級까지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의 改正案을 [附錄 2]表로서 提示한다.

이에 關한 法理論은 趙鼎鉉博士의 “通信行政의 專門性과 公務員法上 職群列”에 詳細하게 論述되어 있다<sup>11)</sup>

## (2) 公務員任用試驗令의 檢討

### (1) 現規定

于先 3級 以上の 通信人力 關係 試驗科目表만을 該令의 [別表 第1號]에 의하여 [附錄 3]으로서 拔萃한다. 4級 以下職分은 이에 準하면 可할 것이므로 便宜上 省略한다.

### (2) 改正案

前述한 改正事由에 따른 職列의 合理化는 再論을 삼기로 하되, 現在 職別 工業研究(電子分野)는 通信研究와 本質上 다르므로 通信研究를 新設할 必要가 있다.

通信技術職의 第2次試驗으로서 電氣通信法規와 電波法規를 擇一로 定해진 것은 工學의 有無線 區分과 調和되지 않으므로 모두 必須로 하여야 한다. 理由인즉 電氣通信法規는 主로 有線分野를, 電波法規는 主로 無線分野를, 各各 規定內容으로 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通信에 關한 高位 行政職이 될 사람이 어느 半面만을 能하기로 要求하는 것은 甚히 不合理하다.

또한, 行政法을 行政學으로 한 것은, 이미 電氣通信法規나 電波法規가 行政法이므로 重疊을 避하고 管理官으로서의 行政技術을 要請한 所以이다. 經營學을 擇一로 한 것도 同一하다.

## 2. 遞信部 人事行政의 改善點

### (1) 專門職의 補職

遞信部の 通信專門職은 郵便·電氣通信 및 電波管理에 必要하며, 特히 電波通信等에는 國際條約에 의하여도 強制된다.

그러나, 郵便(過去의 郵便保險도 包含됨) 專門家를 電波管理職에 補한다든지, 或은 電氣通信中에서도 有線專門家를 無線局長으로 補하는 따위의 人事補職은 斷然코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民間의 無線局 許可要件으로는 반드시 一定한 資格과 定員을 갖출 것을 強制하면서, 遞信部 自體의 無線局에는 果然 法定資格과 定員이 갖추어져 있는지는 反省할 必要가 있다. 1975年 9月 1日 韓國無線從事者協會가 主擧한 海上無線通信에 關한 <세미나>에서 李珍致教授가 發表한 “韓國海岸局의 通信運用의 問題點”에서는 遞信部の 海岸無線局의 法定 有資格者率은 全體의 5% 未滿이라 하였다<sup>12)</sup>. 이렇고서야 大韓民國의 海岸局에 外國船舶이 發信을 할 수 있었는지? 매우 恨心스럽다.

또한, 遞信部 傘下 各 電波監視局에서도 電波通信의 國家技術 無資格者거나 또는 下位 資格者가 民間의 高級有資格者를 監視하고 있는 現實은 矛盾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監視 摘發에 의하여 警告狀 또는 戒告狀이 所屬長 앞으로 보내진다든지 或은 自動車 運轉士에 대한 것과 같은 罰點制度가 強行되어 其他의 處罰을 받게 된다는 것은 納得하기 어려운 點이 많다. 一例로서 船舶局의 SSB나 VHF 電話는 通信室內에 設置되어 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스위치> 및 <프레스 토오크>의 簡單한 操作에 의할 수 있으므로 通信士 아닌 一般船員이 通信을 하여 違規을 저질렀을 境遇, 억울하게도 當該船舶에 選任된 通信士가 處罰된 行政例도 있었다<sup>13)</sup>.

時急히 適格者로 交遞하여야 한다. 日本에서는 1975年 專門官制度가 確立되어 各 地方電波監視局에 主任電波監視官, 電波監視官, 主任電波試驗官, 電波試驗官, 主任電波檢査官, 電波檢査官이 當該 專門職으로서 補해지고 있다.

### (2) 專門職의 確保

于先 遞信部는 現在 勤務中인 專門家에게 技術手當을 增給하든지 海外 派遣의 鍊修를 獎勵한다든지 하여 優待策을 實踐해야 될 것이다.

아울러, 現在의 勤務中인 低級의 國家技術 有資格者의 上級 資格獲得을 獎勵하여 教育·獎學金支給 等の 惠澤을 베푸는 方法도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새로 當該職을 採用함이 重要한 바, 契約公務員制의 論議도 있었으나 待遇 改善이 앞서야 할 것이다. 적어도 電波通信技師 1級 以上の 有資格者로서 10年 以上 乘船 經驗이 있는 者를 1名만이라도 各該當處에 特採할 것을 主張한다.

11) 趙鼎鉉, 通信行政의 專門性과 公務員法上의 職群列, 韓國通信學會誌 第3號, 서울, 1978. pp. 26~27

12) 李珍, “우리 나라 海岸局의 無線電信運用實態에 關한 考察,” 韓國無線從事者協會誌, 1975年 第3號 pp. 1~3

13) 王志均, “電波監視取扱規程의 諸問題點” 光云工科大学 論文集, 第5輯, 서울, 1979 pp. 49~79

總務處의 方針에 따라 公務員採用時에 珠算 및 <타 이영>의 技能所持者에게 點數가 加算되는 特典 속에, 通信關係 國家技術資格所持者는 倍點 加算한다는 原則을 加插 改正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또한, 行政의 計劃的인 執行을 위하여 逕信部 公務員은 長官을 비롯하여 最少限 2年 以上은 移動없이 勤務되시기를 併望한다.

〈附錄 1〉 公務員任用令 別表 1 (1級 乃至 5級 職級表) 通信人力에 關한 拔萃

직 군	계급 급류 직렬	1급		3급		4급		5급		
		갑류	을류	갑류	을류	갑류	을류	갑류	을류	
14, 통 신	통신사	통신 기술 전송 기술 통신 기술	통 신 기 감	통 신 부 기 감	통 신 기 정	전무기과	통신사	통신사보	통신원	통신원보
	통신기과					통신기사	통신기사보	통신기원	통신기원보	
	전송기사					전송기사보	전송기원	전송기원보		
	전자통신기과					전자통신기사	전자통신기사보	전자통신기원	전자통신기원보	

〈附錄 2〉 [改正案] 通信人力에 關한 公務員任用令 別表 1(1級 乃至 5級 職級表) 拔萃分

직 군	계급 급류 직렬	1급		3급		4급		5급		
		갑류	을류	갑류	을류	갑류	을류	갑류	을류	
14, 통 신	통신運用	管理 官	통신管理官	〃	〃	〃	通信運用士	通信 운용士 補	通信 운용技員	通信 운용技員 補
	통신設備		통신技監	통신副技監	통신技正	통신技佐	통신설비技士	통신설비技士 補	통신설비技員	통신설비技員 補
	데이터傳送		통신技監	통신副技監	통신技正	통신技佐	데이터傳送技士	데이터傳送技士 補	데이터傳送技員	데이터傳送技員 補
	통신研究		통신研究官	통신研究官	통신研究官	통신研究官	통신研究士	통신研究士 補	통신研究員	통신研究員 補

〈附錄 3〉 公務員 任用試驗令 別表 第 1號 [3級 以上 各種 任用試驗科目表] 通信人力에 關한 拔萃

구 분 직 별	3급 을류 공개 경쟁 채용 시험				3급 이상 특별채용시험 3급 이상 전직시험· 3급 을류 특별승진시험· 3급 을류 공개 경쟁승진시험			
	제 1차 시험	제 2차 시험		제 1차 시험	제 2차 시험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통신사	헌법 물리학개론 영어	통신공학 전기통신법규 전파법규		행정법 국사	전기통신법규 전파법규			
통신기술 전송기술	上同	회로이론 유선공학 무선공학	전기통신법규 전파법규 중한 과목	행정법 국사	전기통신법규 전파법규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한 과목		
전자통신	上同	전자계산기이론 전자공학 통신공학 전기통신법규		물리학개론 국사	전자공학 유선공학			

〈附錄 4〉

〔改正案〕 通信人力에 關한 公務員任用試驗令 別表 第1號〔3級 以上 各種任用 試驗科目表〕 拔萃分

구 분	3급 을류 공개 경쟁 채용 시험				3급 이상 특별 채용 시험, 3급 이상 전직 시험, 3급 을류 특별 승진 시험, 3급 을류 공개 경쟁 승진 시험				
	직렬	제 1 차 시험	제 2 차 시험		제 1 차 시험	제 2 차 시험		필 수	선 택
			필 수	선 택		필 수	선 택		
통신 관리	헌법 물리학개론 영어 국어	전기통신법규 (통신보안포함) 전파법규(국제포함) 전기통신조약 (포함) 통신공학	행정학 경영학 중합과목	국사 행정학	전기통신법규 (통신보안포함) 전파법규(국제포함) 전기통신조약 (포함)	전기통신 통신공학 중합과목			
통신設備	상동	유선공학 무선공학 전기통신법규 (통신보안포함) 전파법규(국제포함) 전기통신 (포함)	회로이론 전자계상공학 중합과목	상동	통신공학회로이론 통신법규전자계상공학 (유·무선포함)	회로이론 전자계상공학 중합과목			
통신研究	상동	전자계상공학 통신공학 통신법규 (유·무선포함) 행정학	회로이론 전자재료 중합과목	상동	전자계상공학통신공학 통신법규형성학 (유·무선포함)	회로이론 전자계상공학 중합과목			

V. 結 論

통신은 現代生活의 中心課題이며 社會의 動脈을 形成하고 있어서 通信에 關한 國家行政은 國民의 現代社會生活를 支配하는 關鍵이므로 이에 比較되는 環境行政에 上運하여 注目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國家通信行政을 二大別한 즉, 言論이나 輿論 및 〈메스콤〉에 對한 文化公報部의 主管行政과 郵便·電話·電信等에 對한 通信部의 主管行政이 各各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無線放送局의 許可行政만은 通信部電波管理局長이 文化公報部長官과 合議를 要하는 것은 國民을 不便케 하는 것이므로 電波를 管理하는 通信行政으로 單一化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國家通信行政의 分野는 너무 廣汎할 뿐 아니라 專攻의 專攻이 制限되어 있는 故로 그의 範圍를 좁혀서 通信行政만을 研究키로 하였는데, 먼저 考察의 對象이 된 것은 通信公社 發足에 따른 通信行政組織의 改編 課題이었다.

于先 通信主管廳의 定義를 國際電氣通信協約에서 引出하여 보니 通信部야말로 우리 나라 電氣通信의 最高責任部處임이 再確認되었는데, 이의 行政組織은 目標·機構·人力의 3要素로서 分析되므로 이의 意義 定立을 試圖하였다.

이를 基盤으로 하여 通信主管廳의 行政組織을 考察한 즉 通信部의 中央行政機構로서 通信政策局의 新設이 要緊함을 把握했는데, 政策局은 企劃이나 計劃을 統솔할 뿐 아니라 行政機構를 通한 通信人力의 調整合力等에 의한 行政目標達成의 根本으로서 國家發展의 關鍵이 되기 위함이다. 特히 先進國의 行政先例를 追跡한 즉 既히 10餘年前에 大統領 또는 郵政長官 各 直屬下에 確固한 業績을 發揮하고 있음을 確認할 수 있었다.

아울러, 우리 나라 電波管理 組織의 強化는 他部處와의 均衡維持, 行政官廳으로서의 地位等의 見地에서 必要할 뿐 아니라 實로 國家安保上 絶對 緊切함을 直視하였다. 이의 實現方向을 살펴본즉, 電波管理局을 電波管理廳으로 格上됨이 應當하지만 不得已일 때에는 電波管理 次官補나 電波管理局長을 1級 職位로 昇格



하여야 할 것이 肯定되었다.

통신을 基盤으로 하는 見地에서는 通信技術資格檢定業務나 R/TV 管理도 電波管理組織에 還元 乃至 一元化될이 希望된다.

通信人力은 遞信行政을 推進하는 核心인 바, 公務員任用令과 公務員任用試驗令等의 關係部分의 不備로 因하여 莫大한 障礙가 있다고 指摘되므로 이의 改善이 要急하여 敢히 改正案을 提示하였다. 同時에 遞信部의 人事制度에 있어서도 通信專門職의 補職·採用等에도 優待하는 特典이 講究되어야 하겠다.

바야흐로, 祖國은 새 時代 새 社會로서의 革新이 斷行되고 있다. 우리 나라 通信行政의 主管廳인 遞信部도 이 國家의 大命題에 따라 前述한 課題를 早速 果敢히 善處함을 促求期待한다.

이 通信主管廳의 行政組織에 對한 合理化 方案의 實現에 의하여 遞信行政의 效率化가 促進되고 通信文化가 發展되어 그러므로써 國民福祉의 向上과 祖國의 隆昌에 寄與될 것을 確信한다.

### 參 考 文 獻

1. 해신 법령집, 체신부, 1977
2. 국제전기통신협약(조약 제564호), 1976. 2. 9, 판보 제7267호
3. 船員의 訓練. 資格證明 및 當直勤務의 基準에 關한 國際條約, 韓國海洋大學 IMCO 協約硏究會, 釜山, 1978.
4. 俞鎮午外, 新六法, 民衆書館. 서울, 1968
5. Radio Regulations annexed to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vention 1963, 電波振興會, 東京, 1976
6. 金曾漢, 法學通論, 葦聲文化社, 서울, 1960
7. 朴觀淑, 國際法, 法文社, 서울, 1960
8. 徐元宇 譯, 比較行政論, 法文社, 서울, 1976
9. 申相珪·李鍾元, 通信法規要論, 東洋科學社, 서울, 1979
10. 趙鼎鉉, 國際電波法規要論, 實學社, 서울, 1976
11. 韓國電氣通信產業硏究所 編輯部, 逐條電氣通信法規 解說, 서울, 1979
12. 王志均, 電波管理法講義, 海線社, 서울, 1974
13. 金椿澤, 通信事業經營概論, 韓國電氣通信產業硏究所, 서울, 1975
14. 金忠烈, 國際郵便概要, 尙玄文化社, 서울, 1966
15. 孫承錄, 遞信事業論文集, 電波科學社, 서울, 1966
16. 車培根, 커뮤니케이션學概論(上), (下), 世英社, 서울, 1976
17. 月刊 電信電話硏究, 1976~1980, 韓國電氣通信產業硏究所, 서울
18. 郵政省 電波監理局 編輯, 季刊 電波時報, 1976~1980, 電波振興會, 東京
19. 季刊 國際電信電話, 1976~1980, 國際通信文化協會, 東京
20. 日刊 서울신문, 韓國日報, 社說

### ABSTRACT

#### — A STUDY ON RATIONAL METHODS FOR M.O.C.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KOREA —

WANG, JEE KYOON  
Prof. of Kwang-woon univ.

In order to contribute the development for M.O.C. administration in Korea, the followings are considered;

- (1) To open the Office of Tele-communication Policy as soon as possible.
- (2) To intensify the organization for Radio Regulatory.
- (3) To reform the Regulations on Government Officer's appointment and treat communication scientists as well as the other professions.